

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9월 3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8월 22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9월 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에서 발생한 일반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조례의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함(안 제4조)
- 화재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에서는 ‘화재피해주민’을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고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.
 -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.
 -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각각 규정함.
- 최근 5년간 금천구 화재발생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, 5년동안 총 792건이 발생하였고, 인명피해는 사망자 6명, 부상자 40명, 추산 재산 피해액은 34억 8,198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※ 최근 5년간 금천구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(출처 : 서울시 통계)

구분	화재발생(건)			사망자(명)	부상자(명)	피해액 (천원)	
	소계	실화	방화				기타
계	792	712	17	63	6	40	3,481,982
2019년	141	129	5	7	-	4	671,767
2020년	127	108	6	13	2	9	419,587
2021년	118	108	1	9	2	8	825,255
2022년	214	193	1	20	1	14	934,792
2023년	192	174	4	14	1	5	630,581

- 본 조례는 화재피해자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.
- 참고로 서울시 3개 자치구(양천, 광진, 송파)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